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45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김승수
이성권 · 김대식 · 김성원
진종오 · 고동진 · 배준영
조은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술 변화에 맞추어 고전원전기 장치 등을 정비할 정비기술인력에 대해 정비 교육을 제도화하고, 공공 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신기술 적용 자동차의 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동차 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생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고가의 특수 안전장비 구입 비용 문제로 인해 자발적인 정비 교육 참여와 시설 개선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임.

자동차 정비는 단순한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적 영역으로, 국가 주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정비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안전 관리 역량을 확보한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는 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계의 공정한 산업 전환을 돕고 국민의 안전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 2제5항 및 제6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의 제목 “(정비기술교육)”을 “(정비기술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술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u>